

장학위원회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 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교 내·외 장학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
2. 장학규정의 제정, 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학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

제 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과에서 하고, 간사를 둔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부터 시행한다.